

구미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2.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개정이유

가. 현 구미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민간 참여의 근거 부족으로 노사정협의회를 ‘노사민정협의회’로 확대·개편하여 지역내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추진기구로서의 협의체 역할 정립하기 위함

나. 구미시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구미시 간 상생을 통한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노사민정의 책무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안 제3조, 제4조)

다. 협의회 위원회의 임기 및 해촉(안 제6조, 제7조)

라. 사무국의 설치 및 기능 (안 제9조)

마. 실무협의회 구성 및 기능(안 제10조)

3. 조 례 안 : 붙임

4. 참 고 사 항(관계법령)

- 가. 관계법령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입법예고 : 의견없음
- 라.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구미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구미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협력과 상생의 노사 관계 발전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지역의 노사민정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노사민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2. 노사분규 발생 예방 및 해소방안에 관한 사항
3. 근로자 복지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사관계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관련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하고,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수는 같도록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4. 시의회를 대표하는 사람

5.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6. 노동관계 전문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해당 직위의 대행자가 이를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위촉된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회의) ① 협의회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토록 요청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협의회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의결을 할 경우에는 제4조제3항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2분의 1 이상,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2분의 1 이상,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반드시 출석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국의 설치 등)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비상설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두되, 시 노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겸직한다. 직원은 시 노사업무 담당자로 한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사무국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 등의 회의 준비 진행
2. 협의회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3. 본 협의회 운영예산 수립 및 집행 등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를 지원하고 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 노동단체 실무책임자
2. 시 사용자단체 실무책임자
3. 관계 행정기관 노사업무 실무책임자
4.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1.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2. 회의주관은 사안에 따라 실무협의회의 의결로 주관기관을 정하며, 첫 회의는 시가 주관한다.
3. 노사협력 분야에 따른 안전 협의시 실무담당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 검토·조정 및 위임 받은 사항 처리
2. 협의회의 기능 보좌
3. 노사분규 예상 기업체 사전방문 후 교육 및 대화
4. 노사분규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중재 역할
5.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협조체계 유지

⑥ 실무협의회의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1조(회의록)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는 제3조의 각 호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하거나 관계전문가 또는 노사대표 등의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및 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고,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또는 실무협

의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사정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구미시 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에 따라 설치된 구미시 노사정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구미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에 따라 위촉된 구미시 노사정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의 시행일에 새로 구미시 노사민정협회의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및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1명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고용심의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미 심의한 경우 협의회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 하부 협의체 및 사무국의 설치·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